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심사보고서

2025. 3.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11일, 김용민의원 외 23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3.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3.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3.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민 의원)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장 지시로 백해룡 형사2과장을 팀장으로 한 12명의 마약 수사전담팀이 마약 수사를 마무리하던 중 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사 외압은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상태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임.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추천방식에 대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나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어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권

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제정안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유통 및 밀반입 사건
과 관련하여 인천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검찰의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을 요구하는 내용임.

현재 동 수사요구안의 수사 대상과 관련된 개별 특검법률안은 별도로
발의되지 않았는데, 특별검사제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 사
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절차, 사건의 규모와 소요기간 및 수사의 난
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범계)

본 수사요구안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주 문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
2. 제1호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3. 제1호 사건에 대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
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5.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